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31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정근수당) 관련 [별표3] 정근수당 지급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제34조(가족수당) 관련 [별표6] 가족수당 지급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2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